

학산면 종합감사 결과

I

감사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·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
- 수입, 지출,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
-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·누락·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학산면
- 감사기간 : 2017. 11. 14. ~ 2017. 11. 17(4일간)
- 대상기간 : 2015. 11. 10. ~ 2017. 11. 13(2개년)
- 감사자 : 기획감사실장 외 6인

3. 감사중점사항

- 공사·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
- 기획, 총무행정,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
- 농정업무,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
-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
-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
-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
-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

4. 주요위반사항 요약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기획·민원 일반행정	기간제(단기간)근로자 등 고용산재보험 미가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근로자 1인이상 고용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, 특히 고용·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의무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, 2016년~2017년까지 총 18명에 대하 단기간 근로자라는 사유로 고용·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. <p>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】</p>
	민원서류 반려 시 의의신청 미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구제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통지한 사실이 있음 <p>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】</p>
	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위반기간 착오계산 및 과태료 미감경 등으로 이○○ 외 1인에 대하여 총 40,000원의 과태료를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음 <p>【주민등록법 제16조,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】</p>
	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발급 사유가 “분실”인 김▲▲ 외 2명에 대하여 1건당 수수료 5,000원을 징구하여야하면 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않거나 수납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<p>【주민등록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】</p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세출분야	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2016년도 한해대책 양수장비 수리 등 2건의 용역에 대해 60,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미징구 하였으며, 2016년도 생활처리민원사업 공사 3건에 대해 총 1,935,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과다징구한 사실이 있음 <p>【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】</p>
	직불제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위원회참석수당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, 2016년 쌀밭직불금 신청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수당 지급시 학산면 농업인상 담소장 이◆◆에게 7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<p>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】</p>
농업분야	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검토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불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등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<p>【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제2항】</p>
	2016년도 가축통계 조사업무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가축통계조사는 농가별로 전수조사하여 축산 행정 및 가축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 임에도 2016년 상반기 가축통계조사시 이장 및 마을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조사내용, 조사자 날인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군에 보고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<p>【산림축산과-25022(2015.11.17.) 및 11991(2016.05.26.)】</p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세무분야	주민세(재산분, 법인균등분) 과세자료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, 미신고 납부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주민세 총7건, 607,800원이 누락되어 과세 대상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. 【재무과-17115(2016.7.14.) 및 18006(2017.07.07.)】
	취득세(건축물, 이륜차) 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『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(상속의 경우 6개월)이내에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』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,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8 건 20,38,140원을 군에 제출하지 아니함 【지방세법 제20조】
사회복지분야	기초수급대상자 연간계획 미수립 및 방문상담 이행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년초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분기별 1회 방문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을 위한 욕구조사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소득과 생활 실태변동자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자격,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2015~2017년 연간계획을 미수립하고, 전체 223세대중 109세대만 방문하는 등 대상자 관리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1항(확인조사)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(연간조사계획의 수립)】
	노인 이미용권 지원대상자 홍보 및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6~2017년에는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인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신규대상자 및 관외전입자에게도 변동일 다음달부터 지원하여야 하나 25명에게 88매를 미지원하는 등 복지홍보 및 대상자 관리에 소홀히 함 【영암군 노인목욕권 및 아·미용비 지원조례】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사회복지 분야	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수급자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급여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에도 권성하외 1인에 대하여 영수증 미처리 및 체크카드 미사용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 <p>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】</p>
건설도시 분야	환경관리비 정산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학산면에서는 『학산 용신리 배수로 정비공사』를 추진하면서 환경관리비는 적법하게 반영하였으나, 준공하면서 정산내역을 미확인하고 준공함으로써 총 71,000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<p>【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】</p>
	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학산면에서는 『학산 신안정 농로 정비공사』 외 3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 이상에 중복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<p>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】</p>
	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준공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학산면에서는 『학산 계천마을 농로포장 공사』를 준공하면서 본 설계내역에 코아채취 1조를 반영하였으나 미 시공한 채로 준공처리하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아 제작비를 포함한 총 111,000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<p>【건설산업기본법 제49제2항 및 공사감독사업무지침】</p>